

제 호

임시운전증명서

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접는선

(운전자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면허종별 및 번호				
유효기간	일간			
발급사유	☐ 재교부	☐ 적성검사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면허조건				

유의사항

- 임시운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가 없는(정지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사용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위반일로부터 2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접는선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확인서

(경찰서용)

(뒤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면허종별 및 번호				
유효기간	일간			
발급사유	☐ 재교부	☐ 적성검사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면허조건				
발급자	계급		성명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